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

발 의 자 : 강선우 · 정준호 · 이재관
윤호중 · 한병도 · 한정애
서미화 · 김 윤 · 김윤덕
강준현 · 허종식 · 허 영
서삼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,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,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.

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,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

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·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).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가족돌봄청소년”이란 부모가 사망·이혼·가출하거나 장애·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,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(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.
8. “은둔형 외톨이 청소년”이란 사회·경제·문화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”를 “위기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(이하 “위기청소년등”이라 한다)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돌봄청소년의 근로·가족돌봄·부양 실태”로, “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”를 “위기청소년등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제1항 중 “위기청소년 관련 정보”를 “위기청소년등 관련 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6호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각각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각각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위기청소년”을 “위기청소년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, 간병 및 돌봄 지원, 교육지원,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

다른 가족돌봄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 <u>가족돌봄청소년</u> ”이란 부모가 사망·이혼·가출하거나 장애·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,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(부양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8. “ <u>은둔형 외톨이 청소년</u> ”이란 사회·경제·문화적 원인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.
제2조의2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<u>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</u> 를 파악하는 등	제2조의2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<u>위기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</u> (이하 “위기

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

청소년등”이라 한다)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 돌봄청소년의 근로·가족돌봄·부양 실태-----

위기청소년등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-----

ㄱ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-----위기청소년등-----

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
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
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
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
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
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
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·
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
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
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의2(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
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
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,
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
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
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①

위기청소년등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)

-----위기청소년등-----

-----.

제12조의2(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
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)

① -----위기청소
년등 관련 정보-----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
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
(이하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
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
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
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
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
아 수집·보유·이용·제공·
연계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
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
및 교육에 관한 정보

4.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
특별지원에 관한 정보

5. ~ 15. (생략)

1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
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

③ (생략)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
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
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
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위기청소년등

4. -----위기청소년
등-----

5. ~ 15. (현행과 같음)

16. -----
--위기청소년등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위기청소
년등-----

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
⑤ ~ ⑩ (생략)

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

제13조(상담 및 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(이하 “특별지원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, 학업

-. -----

-----.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5장 위기청소년등 지원

제13조(상담 및 교육) ① -----
-----위기청소년등

-----위기청소년등-----

-----.

② 위기청소년등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기청소년등 특별지원) ① -----
-----위
기청소년등-----

-----.

② -----

지원, 의료지원, 직업훈련지원,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. 다만,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---. ---위기청소년등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
① -----
-----위기청소년등-----

---.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2(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돌봄청소년의 지원을 위한

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, 간병 및 돌봄 지원, 교육지원,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